

#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5
----------	------

발의연월일 : 2024. 5. 30.

발의자 : 문기호, 김태욱, 김도운,  
홍영진, 정재환, 안영호,  
문희성, 박경흠, 이명녀,  
강혜순

## 1. 제정이유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과 함께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 줍기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과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라. 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령: 「자연환경보호법」 제4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4. 5. 24. ~ 5. 29.(5일간)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가볍게 걷거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라 함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
3.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참여자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 (생략)

###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 함.

## 3. 작성자

- 소 속: 환경미화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김준수
- 연락처: 052-290-3761